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과 정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람에게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리처드 스톨먼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통해 자유소프트웨어의 4대 자유를 발표

-실행의 자유 : 사용자나 목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와 수정의 자유 : 누구든지 해당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스 코드의 공개와 그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배포의 자유 : 수령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버전 또는 수정하지 않은 버전의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코드는 실행 파일 모두를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정 프로그램 배포의 자유 : 변경 사항을 자유롭게 배포해 커뮤니티 전체가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SI가 정의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열 가지 요건

1. 자유 재배포
2. 소스 코드의 배포
3. 2차적 저작물의 허용
4. 저작자의 소스 코드 통합
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6. 사용 분야 제한 금지
7. 라이선스의 배포
8. 특정 소프트웨어에 한정한 라이선스 금지
9.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 금지
10. 라이선서의 기술적 중립성
11.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와 기본 법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최초 창작, 공개된 이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수정, 배포, 재배포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런 오픈소스 생태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오픈소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일반적인 법해석론이고 판례이다.

한국 법에 의하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라이선서(이용허락자)로서 라이선시(피이용허락자)에게 저작권을 이용을 이용료 부과 등 일정한 조건하에 허락하고,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관련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정해 합의한 계약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대가가 무료이여야 하고, 지속적 공급 망에서 오픈소스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시도 수령한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의 결과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라이선서가 될 수 있는 상호 선순환 구조다. 대신에 저작권자가 공개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현상 그대로 제공할 뿐 그 품질을 보장하지 않고, 저작권자는 사용자가 사용으로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부분 준거법과 분쟁 해결 기관을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허락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수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컴퓨터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카피레프트는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원소프트웨어가 수정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생성되는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 특정 라이선스를 확대 적용해야 하고 원소프트웨어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외부에 배포할 때 완전한 해당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라이선스는 철학과 취지를 밝힌 서문과 중요 조건을 규정한 본문으로 구성되는데 라이선스별로 그 조항 내용의 장단과 구성에 차이가 있다. 본문은 통상 사용자의 권한 및 사용자의 의무, 보증 부제공 조항, 소프트웨어의 결합에 관한 조항, 특허권 부여 및 특허보복 조항, 유로 판매 금지 조항, 라이선서의 품질보증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마지막에 저작권 고지문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1.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의한 오픈소스의 법적 보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배포되지만 몇 가지 법적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초로 창작한 자에게는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저작권이 부여되고,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자가 배포 조건으로 선택한 특정 라이선스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EPL, CPL, MPL과 같은 예외적인 극소수를 제외하고 GPL을 포함한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명시적인 준거법, 재판 관할 조항을 두지 않는다.

1. 오픈소스와 특허권의 충돌과 공존

오픈소스의 철학은 특허 제도를 반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제3의 특허권자가 모든 오픈소스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허권도 가진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다른 사용자를 압박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일부 라이선스들은 사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특허권 이용을 허락하는 조항과 이용자가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 그의 특허권 내지 저작권 라이선스를 종결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켜 특허권과 충돌을 대비한다. 오픈인벤션네트워크 같은 방어적 특허 풀을 결성하고,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를 확산시키거나 특허 불행사 화약을 공표하기도 한다.

특허권 허락 조항은 오픈소스의 최초창작자나 수정, 배포자 등 모든 기여자들이 자신들의 일정 범위의 특허권을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이용허락하는 것이다.

특허 보복 조항은 오픈소스 사용자가 자신의 특허권에 기초해 다른 사용자에게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사용자 겸 소송제기자의 특허 라이선스 등을 종료시키는 조항이다. 라이선스별로 종료 사유가 다르고 종료시키는 라이선스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1. 오픈소스 컴프라이언스 정책과 절차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별로 일정한 조건과 의무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없어 의도치 않게 라이선스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발행한다. 여러 오픈소스가 혼용되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전유 라이선스 간 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공표한 ‘오픈소스 확인 및 검토 5단계 컴프라이언스 절차(A Five Step Compliance Process for Open Source Identification and Review)’

첫째 단계 – 소스 코드에 대한 스캔 과정

어떠한 소스 코드가 활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방법으로는 개발자 인터뷰와 바이너리 툴의 사용과 소스 코드 스캔 툴의 사용이 있다.

두째 단계 – 사용된 오픈소스 코드의 식별

소스 코드 스캔을 통해 사용된 오픈소스의 목록과 현황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한다.

셋째 단계 – 사용된 소스 코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이슈를 파악하고 검토

어떤 소스 코드에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라이선스 간의 양립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넷째 단계 – 아키텍처 검토

활용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다른 컴포넌트와 통신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들을 검토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자 공간에 있는지 또는 커널 공간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른 오픈소스와 결합하는지, 아니면 자사의 전유적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지와 제3자 납품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지 밑 그 결합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된다.

다섯째 단계 – 최종 검토 및 승인 결정

앞선 단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 결정하되 전체 소프트웨어의 개발 필요성과 일정, 대체 가능 오픈소스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1. 오픈소스 라이선스 권리 실행의 유형과 현황

오픈소스 라이선스 권리 실행의 두 가지 목적

1. 커뮤니티 보호 목적 유형

지금까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PL바이얼레이션과 소프트자유보호협회가 주로 커뮤니티 보호 목적으로 권리 실행을 주로 담당해 왔다. 이들은 사용자의 사용, 수정, 배포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유지해야 관련 산업도 보호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1. 저작권자의 상업적 이익 극대화 목적 유형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최대한의 법적 주장을 구성해 위반 행위자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있다.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공통으로 부과하는 저작권 고지 의무의 범위와 방법부터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수준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1. 오픈소스 컴프라이언스 단체와 활동

-오픈소스이니셔티브 (OSI, Open Source Initiative)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오픈소스의 장점 등을 널리 알리고 열 가지 요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그 정의에 맞는 라이선스를 인증한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SF, Free Source Foundation)

1985년 리처드 스톨먼 등에 의해 설립되어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철학에 관한 역사적 문건들을 공표하고, 자유 소프트웨어의 네 가지 자유를 정립했으며 GPL, LGPL, AGPL 등 GPL 페밀리 라이선스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GNU운영체계의 상당한 부분과 GNU이맥스를 포함한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미국의 연방 저작권 등록소에 등록해 두고 GPL라이선스 위반자에 대해 권리 실행을 한다. 라이선스 침해 행위를 조사해 위반 기업들에 대해 먼저 경고장을 보내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 지원하며,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드물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실행 활동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는 ‘커뮤니티 보호 목적 권리 실행의 원칙’을 발표했다.

-자유소프트웨어유럽재단 (FSFE,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유럽에서 설립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확산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전을 갖고 교육과 문서화, 라이선스 위반의 시정, 콘퍼런스 개최 등 법률 관련 활동, 오픈 표준의 제정, 소프트웨어 특허의 확산 금지 내지는 폐지를 위한 활동, 정부 조달에 자유 소프트웨어의 활용 증대를 위한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리눅스 재단 (LF, Linux Foundtuin)

리누스 토르발스가 처음 개발한 GNU 리눅스 운영체제의개선, 확산과 장려를 이한 모든 활동들을 영위하고 있다. 기술 및 컴프라이언스에 관한 교육, 콘퍼런스, 포럼을 개최하고, 자동차, 소비자 가전, SPDX등 워킹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고, 컴프라이언스 모델과 실행에 관한 많은 문건들을 발표하고 있다.

-GPL바이얼레이션 (GPL-violation)

리눅스 커널의 일부를 개발한 독일 개발자 하랄트 벨테가 악의적인 GPL 위반 회사들을 상대로 권리 실행을 하는 조직으로 2006년에 출범해 100건 이상의 권리 실행을 했다.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 (SFLC, Software Free Law Center)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교수인 에벤 모글렌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기업들이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자문한다. 저작권 라이선스, 특허권 방어, 상표권과 거버넌스에 관한 컨설팅과 관련 소송 지원 활동을 하고,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는 법, ‘GPL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실무 가이드’ 버전 1, 2 등과 여러 백서, 오픈소스 저작권 밑 특허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다.